제87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제2종 특정물질 지정 및 부담금 부과(신설) ㅇ 특정물질의 종류 등(안 제10조의2, 별표 2) – 제1종 특정물질(오존층파괴물질) 및 제2종 특정물질(HFCs)의 종류 등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규정함 –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을 별표 2의 Ⅺ군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ㅇ 부담금의 산정기준 세부 사항(안 제10조의4, 별표 3) – 제1종 및 제2종 특정물질 각각의 계산식을 별표 3으로 규정함 ▶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, 제10조의4	1.비중요
2	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시공자 선정절차 등(신설) ① 경쟁입찰을 통해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전문가·주민대표 등이 평가 후 주민협의체 의결을 통해 시공사 선정 ② 홍보부스, 인터넷홍보, 합동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 ③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금지 ▶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1, 제20조의13, 제20조의14, 제20조의15, 제20조의16, 제20조의17, 제20조의18, 제20조의19, 제20조의20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관리규약준칙 포함 사항(강화) ㅇ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회의록 작성, 녹음·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▶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.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(강화) ㅇ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: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추가 ▶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3.주차장 안전관리 의무(강화) ㅇ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 추가 ▶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4	간이무선국 · 우주국 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(신설) ㅇ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-V2X(5855 ~ 5875 ㎒)와 WAVE(5895 ~ 5925 ㎒) 대역으로 항을 분리 ㅇ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, 안테나 공급전력 등 세부 항목 규정 ㅇ 안전과 직결되는 전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역외 발사 규정 신설 ▶ 간이무선국 · 우주국 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소방청)	1.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(강화) ㅇ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고,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– (현행)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의 규격(가로, 세로, 높이, 면적)만 정함 – (개선) 규격 + 설계하중(활하중 5kN/㎡ 이상) ▶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2. 비상구 설치기준 정비(강화) ㅇ 비상구의 설치 목적(비상시 신속히 피난하기 위해 설치)에 따라 주된 출입구와의 이격거리 기준 뿐만 아니라, 영업장의 일부를 축소하여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,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거리를 기형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 ▶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	1.중요 2.중요